

잔류성오염물질 []대기 []배출시설
[]폐수 []방지시설 개선계획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--------	---------

제출인	성명(대표자)	법인등록번호
	주소(사업장)	전화번호

제출내용

업종		주생산물		
대기·폐수 배출시설·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(예정)일		개선계획서 제출사유		
대기·폐수 배출시설·방지시설의 변경완료·개선완료·가동중단·위탁처리(예정)일		개선(가동중단·위탁)기간		
부적정 운영내용				
시설명	굴뚝번호(폐수배출구)	규격	수량	결함내용·고장
폐수 위탁처리				
위탁처리방법		위탁업체명	위탁처리량	
			㎥ / 일	
잔류성오염물질 배출예상농도		예상평균배출 가스량	예상평균배출 폐수량	일일가동 예상시간
항목	농도			
		㎥ / hr	톤 / hr	

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·폐수 배출시설·방지시설에 대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유역환경청장
지방환경청장 귀하

구비서류	시설개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작성방법

- 1.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2.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